

『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0월 25일

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지원국장 이창형

나. 제안이유

- 구미형 미래융합 신산업의 소재·부품 관련 실증인프라 고도화, 'R&D→실증→사업화→해외진출' 등全过程을 지원하는 미래 혁신형 클러스터 조성으로 산단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
-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2 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(1) 출연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
(2) 출연금액 : 금1,000,000천원(도비 300,000, 시비 700,000)

※ 3차년도('22. 1월 ~ '22. 12월) 소요예산 중 지방비 매칭금액

(3) 사업내용 : 개방형 혁신랩 및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을 통한 미래
신산업 핵심소재 부품관련 전주기 실증지원

(4) 출연근거

○ 법 령 : 지방재정법(제18조), 국가균형발전특별법(제3조),

과학기술기본법(제16조의3), 산업기술혁신촉진법(제19조),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제20조)

○ 조 례 :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(제5조, 제9조, 제10조)

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나. 주요 사업

(1) 사 업 명 :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

(2) 사업기간 : 2020년 9월 ~ 2023년 12월(40개월)

(3) 사업위치 : 구미시 첨단기업1로 17 (구미전자정보기술원)

(4) 총사업비 : 200억원 (국비 137, 도비 11.1, 시비 25.9, 민자 26)

※ 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사업비	연차별 투자계획			
		'20년	'21년	'22년	'23년
계	200	58.5	45.1	46.5	49.9
국 비	137	45	30	30	32
도 비	11.1	2.1	2.58	3	3.42
시 비	25.9	4.9	6.02	7	7.98
민 자	26	6.5	6.5	6.5	6.5

* 국비·민자는 직접 출연

(5) 추진주체 : 산업통상자원부, 경상북도, 구미시

(6) 전담기관 : 한국산업단지공단

(7) 주관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
(8) 사업내용

- 신산업 발굴 및 사업화를 위한 산학연 협의체 간 기술정보 교류, 컨설팅,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한 개방형 혁신랩 구축
- 소재분석, 제품설계, 연구개발장비 등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 및 통합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
- 완성제품, 소재·부품기업, 소프트웨어 기업 등 다양한 기업과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학·연으로 구성된 융합얼라이언스 운영
- 테마별 신사업 아이템 발굴에서부터 R&D, 실증, 사업화 단계인 마케팅까지 단계별 기업 성장지원

(9)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- 2019. 8. :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계획서 제출(산업부)
- 2019. 9. : 스마트 산단 구미 공모선정
- 2020. 1.~6. : 신사업 발굴 연구용역
- 2020. 11.~: 산학연 협의체 모집 및 운영

- 2021. 3.~4. : 모듈형 토탈기업지원 실시
- 2021. 7. : 1차년도 공동활용장비 2종 구축완료
- 2021. 9. : 개방형 혁신랩 시범운영
- 2021. 10. : 온라인 플랫폼 구축 완료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산업 간 융합 활성화를 통한 구미형 신산업 시장 창출 요구로 기존 공급중심이 아닌 수요중심의 개방형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
- 스마트 산단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·중견기업 주도의 수평-수직적 상생협력 강화로 자생적 신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
- 첨단 공동활용 장비, 통합지원 플랫폼 등 지역 역량 집적화를 통해 단계별 기업 성장 지원 체계 구축 필요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3조
-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6조의3
-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, 제19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 제5조, 제9조, 제10조

-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- 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예산편성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의 요지 - 전문위원 변 상 용

○ 본 「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」 은,

- 소재부품 산업관련 실증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중소·중견기업 상생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제출된 출연 동의안으로써,
- 지역 기업에 자생적 신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 산단 고 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7. 토 론 요 지 : 생 략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9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